국세청
WWW.NTS.GO.KR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17. 12.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P r e f e a c e

머 리 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800만 근로자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2017년 귀속 근로소득을 2018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책자는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서로 매년 수정·보완하여 발간해 오고 있으며, 많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세법내용,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로 제공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사용자 편의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시 참고할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종합안내서, 신규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리플릿, 동영상 강의 등을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 12.

법인납세국장 유 재 철

National Tax Service

Contents

목 차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_ 7

I 세무용어의 이해

1. 근로소득이란? _ 10
2. 일용근로소득이란? _ 12
3. 어느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인가요? _ 13
4. 급여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_ 14
5. 연도별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_ 15

II 연말정산의 이해

1. 연말정산이란? _ 16
2. 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_ 17
3.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 _ 18
4.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_ 23
5.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_ 24

III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1. 근로소득공제 _ 31
2. 인적공제 _ 32
- 기본공제 _ 34
- 추가공제 _ 37

3. 연금보험료공제 _ 39
4. 특별소득공제 _ 41
- 보험료 공제 _ 41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_ 42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_ 44

5. 그 밖의 소득공제 _ 51
- 개인연금저축공제 _ 51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_ 52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_ 53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_ 56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_ 58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_ 61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_ 62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_ 63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_ 64

6.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_ 65
- 세액감면 _ 65
- 세액공제 _ 67
- 특별세액공제 _ 72
- 월세액 세액공제 _ 84

Contents

목 차

IV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_ 85
2. 외국인의 연말정산 _ 86
3. 외국인 근로자 세액감면 _ 88

V 연말정산 사례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_ 90
2.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_ 91
3. 제출서식 작성 사례보기 _ 92
   -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_ 93
   - 의료비지급명세서 _ 98
   - 기부금명세서 _ 99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_ 101
4.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기 _ 102
   -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 확정신고 절차 _ 102
   - 경정청구서 작성사례 _ 103
5. 월급에서 매월 징수되는 세금은? _ 104
6.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하기 _ 105
7.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 _ 109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1. 연말정산 정보 확인('18.1월 초)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18.1월)
3.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18.2월) [근로자➔회사]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18.2월) [회사➔근로자]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18.3월) [회사➔근로자]

연말정산 정보 확인('18.1월 초)

»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뉴스→보도자료)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상담사례 : 연말정산 상담사례 책자 및 인터넷상담사례(www.hometax.go.kr→상담/제보→상담사례검색) 참조

연말정산시 필요한 정보

-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 세법 개정 내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방법 및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 소득·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18.1.15일 Open 예정) (p.20 참조)

-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적정여부 확인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 1.15~1.18.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이면 1.20.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받아야 함

-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함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 주택자금공제 요건 충족여부 확인)
-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제출('18년 1월~3월)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이를 반영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작성한 후 회사에 온라인 제출 (p.18 참조)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18년 2월 말)

»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 ➔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18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대부분 3개월 이내 수령 가능)

»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 ㉒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원천징수영수증 ㉓, ㉔, ㉕)을 차감한 결과,

「원천징수영수증 ㉖ 차감징수세액」란이 + 인 경우 「납부할 세금」,
−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제도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분납신청 여부" 란에 분납여부를 기재하여 신청

Ⅰ. 세무용어의 이해

1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유의 사항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06.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과세특례적용 부분(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 고용관계 및 계속성 여부에 따른 소득구분

소득 종류	주 요 특 징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

※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을 구분

- 학교의 외부강사 소득구분

사 례	소득 구분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 교사가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 법원의 판결·화해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
  - 그 판결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소득구분

구 분	소득 종류
근무 기간 중 부여받아 행사	근로소득
근무기간 중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2 일용근로소득이란?

■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 사무·타자·취사·경비 업무 종사자)는 일반근로자임

-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봄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함),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는 일반근로자임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만원)} × 세율(6%)]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정기간 단위로 일용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6%)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급여액 137,000원 : 999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지급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제출시기	4월 말일	7월 말일	10월 말일	다음해 2월 말일

* 해당연도 소득을 12.31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3 어느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인가요?

수입시기에 의하여 근로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됨

-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잉여금 처분결의일
- 인정상여 :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유의 사항

근로소득 귀속연도

구 분	귀속시기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지급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계량·비계량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연말정산 이후 급여 소급인상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의 근로를 제공한 날
연차휴가수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
연봉외에 선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제공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는 이익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성과급으로 받은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
인수·합병에 따른 노사합의로 받는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4 급여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금전적 대가 중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아래의 예시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임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만큼 요건이 까다로워요~

※ 비과세소득 예시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연구활동비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국외근로소득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 : 월 100만원(외항 선박·국외 건설현장 월 300만원)]
처우개선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취재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벽지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이주수당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5 연도별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12년 귀속	'13년 귀속	과세표준	'14년 귀속	'15년 귀속	'16년 귀속	과세표준	'17년 귀속
12백만원 이하	6%	6%	12백만원 이하	6%	6%	6%	12백만원 이하	6%
46백만원 이하	15%	15%	46백만원 이하	15%	15%	15%	46백만원 이하	15%
88백만원 이하	24%	24%	88백만원 이하	24%	24%	24%	88백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35%	1.5억원 이하	35%	35%	35%	1.5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38%	1.5억원 초과	38%	38%	38%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5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760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5억원 초과	17,0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과세표준 × 40%) − 2,940만원

Ⅱ. 연말정산의 이해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 매월 원천징수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 연말정산

법령에서 정한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

» 연말정산 시기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2 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

》 기본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p.93 참조)
  -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 *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전산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3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내용

홈택스(www.hometax.go.kr)→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맞춤형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은 '정부3.0 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이 보다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한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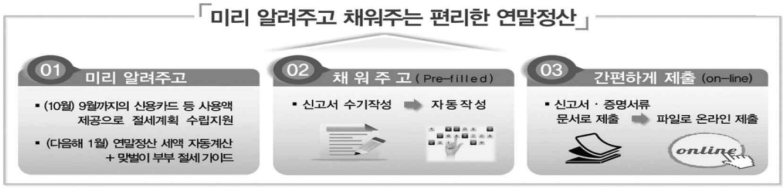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Tax-plan)

○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자신이 자동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국세청이 모르는 부양가족,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의 추가 입력 필요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안내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Pre-filled)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지원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예 : 안경구입비 등)도 입력가능

○ (경정청구 자동작성)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수정사항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및 환급세액 계산

* 2015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

간편제출 서비스 (On-line)

○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On-line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를 일괄다운받아 **지급명세서 작성에 활용**

* 회사에서 근로자기초자료(인적사항, 총급여, 4대보험료, 기납부세액 등) 등록 선행 필요

※ 「편리한 연말정산」(홈택스)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내용

서비스 종류		제공 내용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액 사전 제공	1~9월 사용금액 제공
	절세 계획 수립 지원	절세Tip, 유의사항, 3년간 추세 등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전 항목 수동입력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채워주기
	맞벌이 부부 세액 비교	세부담 최소화하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안내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자동작성 * 종전에는 종이없는 연말정산 사업장만 자동 작성(공무원, 대기업 등)
간편제출 서비스	• 세무대리인 위임 근로자 • 자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근로자 •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 근로자	원클릭으로 회사 제출가능 (회사에서 간편제출을 희망하여 근로자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출력, 다운로드 기능 및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및 연말정산 세액계산과 연동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으로 종전방식으로도 연말정산이 가능함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온라인 제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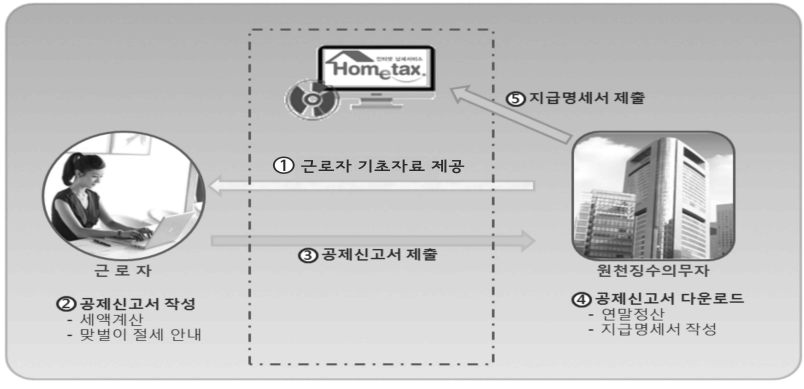

①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급여정보 등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②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회사가 제공한 급여정보 등을 이용하여 공제신고서를 간편하게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함

'18.1.18.까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정제출 가능

○ 영수증 발급기관이 기한내 제출한 자료는 '18.1.15.부터 조회할 수 있음
다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수집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개통 이후 1월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1월20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므로 일부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가 변경 될 수 있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해당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1월 20일부터 변경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1월 17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인증수단이 있는 경우는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는 **온라인신청·FAX 및 세무서 직접방문**을 이용하여 동의 신청하여야 함

○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음
※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성년이 된 '98년 출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해당 자녀의 자료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함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①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② 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금융기관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가능 합니다.

③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④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온라인신청, FAX 신청 등을 통해 연중상시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1999.1.1. 이후 출생)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구 분	공제항목
공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학생 1명당 50만원 한도)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기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금납입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기부금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홈택스→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신청)을 할 수 있음

4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총급여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 6세이하, 출생·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5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table>
<tr><th>항목</th><th colspan="3">구 분</th><th>공제금액 · 한도</th><th colspan="3">공 제 요 건</th></tr>
<tr><td rowspan="11">인적공제</td><td colspan="3" rowspan="9">기본공제</td><td rowspan="9">1명당
150만원</td><td>구분</td><td>소득요건*</td><td>나이요건**</td></tr>
<tr><td>본인</td><td>×</td><td>×</td></tr>
<tr><td>배우자</td><td>○</td><td>×</td></tr>
<tr><td>직계존속</td><td>○</td><td>만 60세 이상</td></tr>
<tr><td>형제자매</td><td>○</td><td>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td></tr>
<tr><td>직계비속
(입양자 포함)</td><td>○</td><td>만 20세 이하</td></tr>
<tr><td>위탁아동</td><td>○</td><td>만 18세 미만</td></tr>
<tr><td>수급자 등</td><td>○</td><td>×</td></tr>
<tr><td colspan="3">*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td></tr>
<tr><td rowspan="4">추가공제</td><td>경로우대</td><td>1명당 100만원</td><td colspan="3">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td></tr>
<tr><td>장애인</td><td>1명당 200만원</td><td colspan="3">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td></tr>
<tr><td>부녀자</td><td>50만원</td><td colspan="3">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td></tr>
<tr><td>한부모</td><td>100만원</td><td colspan="3">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td></tr>
<tr><td colspan="3">연금보험료 공제</td><td>전액</td><td colspan="3">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 기여금</td></tr>
<tr><td rowspan="3">특별
소득공제</td><td rowspan="3">보험료</td><td>건강보험료</td><td>전액</td><td colspan="3">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td></tr>
<tr><td>노인장기요양
보험료</td><td>전액</td><td colspan="3">근로자 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td></tr>
<tr><td>고용보험료</td><td>전액</td><td colspan="3">근로자 본인의 고용보험료</td></tr>
</table>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특별 소득공제	주택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공제한도 – '15.1.1.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이고 고정금리 : 1,800만원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1,500만원 15년 이상 상환, 기타 : 500만원 10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300만원 – '12.1.1. 이후 차입분 : 500만원(비거치식·고정금리 대출 : 1,500만원) – '11.12.31. 이전 차입분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 '14년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종전한도로 '17년까지 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만 해당)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12.12.31.) 만료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100%* · 50%** ·30%(2015년이후) : 벤처조합·벤처기업 출자] * 1,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 공제한도 '15년 이후 투자 / 종합소득금액의 50%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30%)	− 15% 공제대상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직불카드(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 40% 공제대상 사용금액 ·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총급여 1.2억원 초과자 2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최대 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그밖의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그밖의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table>
<tr><th colspan="2">항목</th><th>구 분</th><th>공제금액·한도</th><th>공 제 요 건</th></tr>
<tr><td colspan="2">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td><td></td><td>2,500만원
한도</td><td>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액이 2천5백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5년 이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td></tr>
<tr><td>세액감면</td><td colspan="2">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td><td>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50·100%)
감면</td><td>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경력단절여성은 '17.1.1.) ~ '18.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 세액감면(연 150만원 한도)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자
※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 : 복직한 날로부터 2년 또는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감면 적용</td></tr>
<tr><td>세액공제</td><td colspan="2">근로소득
세액공제</td><td>연 50만원
(66만원,
74만원) 한도</td><td><table><tr><th>산출세액</th><th>공제금액</th></tr><tr><td>130만원 이하</td><td>55%</td></tr><tr><td>130만원 초과</td><td>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td></tr></table>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 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td></tr>
<tr><td></td><td rowspan="3">자녀
세액
공제</td><td>기본공제
대상자녀</td><td>–</td><td>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td></tr>
<tr><td></td><td>6세이하</td><td>–</td><td>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td></tr>
<tr><td></td><td>출산·입양</td><td>–</td><td>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td></tr>
</table>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과학기술인			연금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 12% (총급여 55백만원 이하는 15%)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총급여 1.2억 이하 400만원, 초과자 300만원 한도)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 × 15%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난임시술비 20%) *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성형수술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용 · 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 / 의료비 공제금액 ㉲<총급여액 3% /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 ㉯, ㉰, ㉱, ㉲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65세 이상				
			㉰ 장애인				
			㉱ 난임시술비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초등학생 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법정기부금		·2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2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 공제한도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지급액 (750만원 한도)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Ⅲ. 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이해

1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나,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 − 1억원) × 2%

유의 사항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됨
-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공제 적용

2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함

■ 인적공제 한도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유의 사항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개요

구 분	내 용
①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②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대상자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 2014년 세법개정으로 추가공제 중 6세이하, 출산·입양자 및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
  - 근로자의 공제대상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우선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근로자가 공제

01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공제대상 판정 시기

구 분	판정 시기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유의 사항

-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기본공제 대상자	공 제 요 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	×	×		
배우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57.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		1997.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1957.12.31. 이전 1997.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위탁아동	18세 미만	○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소득금액 요건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
-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함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구 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사례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있는 자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전 금액)
퇴직소득	•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금융소득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 등	• 작물재배(논농사·밭농사) 소득만 있는 직계존속 • 주택 1채(고가주택 제외) 소유한 경우의 주택임대소득
연금소득	• 2001.12.31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직계존속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08년 귀속부터)

사례별 기본공제 가능 여부

	사 례	답 변
1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한 경우(배우자 소득 없음)	12.31.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공제 가능
2	군 입대한 아들(만22세)	영내 기거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나 나이기준(만20세) 초과하여 공제 불가능
3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 (모두 소득 없음)	모두 공제 가능.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기본공제 불가능
4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 (소득 없음, 나이 65세)	올해 사망한 경우 공제 가능
5	이혼한 부부의 자녀	부부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이혼한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6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
7	외국인 거주자의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직계존속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8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생모	사정을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 생모임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
9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 가능

0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1947.12.31.이전)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연 100만원

유의 사항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등 제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3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연금보험료 공제한도

-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유의 사항

▸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
-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능

▸ 2002. 1. 1.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

- 소급 개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으로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소급기여금

-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법무부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003년 이전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소급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나 귀속연도별로 공제비율은 다르므로 유의

소급기여금 공제 비율

귀속	2000년 이전	2001년	2002년 이후
공제 비율	소득공제 되지 않음	납부금액의 50% 공제	납부금액의 100% 공제

반납금 공제 여부

-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특별소득공제

01 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 대상

공제대상 보험료	보험료 공제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공제시기 : 보험료 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유의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차액 납부
  -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 지역가입 · 소득월액 국민건강보험료
  -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 지급한 보험료와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
  -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음
-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0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원)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
  -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1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16.3.16.~'17.3.9.까지 : 1.8%, '15.3.13~'16.3.15.까지 : 2.5%)
  - * 공제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유의 사항

- 국민주택규모의 면적
  - 주거전용면적이 85 m^2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m^2 이하 주택)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

-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 구분등기되지 않은 경우 : 가구당 전용면적의 합계인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구분등기된 경우 :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 종전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10.1.1.부터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주택자금공제 한도

<table>
<tr><th>공제항목</th><th>개별한도</th><th colspan="2">통합한도</th></tr>
<tr><td>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td><td>연 300만원</td><td rowspan="2">연 300만원</td><td rowspan="3">연 300~1,800만원*</td></tr>
<tr><td>주택마련저축공제</td><td>연 300만원</td></tr>
<tr><td>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td><td>연 300만원
~1,800만원</td><td colspan="2">* 경과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 총 한도액 구분
• '15.1.1 이후 차입분
<table>
<tr><th colspan="3">상환기간 15년 이상</th><th>상환기간
10년 이상</th></tr>
<tr><td>고정금리이고
비거치</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td><td>기타</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td></tr>
<tr><td>1,8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d>300만원</td></tr>
</table>
• '14.12.31.이전 차입분 : 연 500만원<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한도
• '11.12.31.이전 차입분 :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한도
• '03.12.31.이전 차입분 :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한도</td></tr>
</table>

금융회사에서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 소득공제 가능한 주택임차차입금은 금융회사에서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용대출 등을 통해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이 아님

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공제한도 종전규정
- 2014년 이전 차입분 500만원(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 1,500만원)
- 2011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한도)
- 2003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및 '기준시가 4억원으로 상향조정'
※ 2013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규정(국민주택규모 기준 및 기준시가 3억원)을 적용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채무자 = 소유자" 요건 위반 시 요건 위반일 이후 불공제(이전분 공제)

소득공제 배제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 2014.1.1 이후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 삭제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특례사항	구체적인 내용	비 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 주택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1998.5.22 ~ 1999.12.31 취득 주택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당해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여야 함 ※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은 기존에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2003.1.1 이후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주택 취득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담보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상환기간만 15년 미만이었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 이 경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기준의 적용은 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 공제금액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2007.2.28 이후 연장분부터 적용 전환 또는 연장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06~'13년까지 3억원) 이하 요건 충족
주택양수자 차입금 인수	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 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주택양수시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요건 충족

차입시점에 따른 법률개정 경과 조치

차 입 금	경과 조치
2000.10.31 이전 차입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 적용하지 않음
2003.12.31 이전 차입분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0년 이상인 차입금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15년 이상)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공제한도는 6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1,000만원 한도 공제
2005.12.31 이전 차입분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공제 > 거주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취득 당시 기준시기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면 공제 가능
	<적용사례> • 2005.12.31. 이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오다가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인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2005.12.31. 이전 2주택 이상자가 2006.1.1. 이후 주택의 추가 취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2주택이라 하더라도 부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공제 가능

공제대상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분양권의 범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 포함)
주택분양권 가격 요건	4억원('13년 이전 3억원) 이하 (2006.1.1 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 가격 산정 방법 –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조합원입주권 : 다음과 같이 계산 청산금 납부 시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 지급 시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차입금의 범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은 그 차입일(차입요건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 해당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일 것 • 해당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할 것(2007.1.1 이후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
공제 배제사유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유의 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시 상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불가능

장기주택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수하면서 차입금 승계

- 주택의 전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전 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
- 승계당시 기준시가 4억원(20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

최초 기준시가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초과 여부 판단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공제 여부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에는 포함됨

-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차입금
  -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한도대출방식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음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
  -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 여부를 판단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

- 2000.10.31. 이전에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 경과 후 차입한 상환기간 8년의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와 같이 전환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됨

-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인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 가능하므로,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참고] 차입금과 주택의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상 황	공제 여부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제 대상에 해당됨
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근로자가 전액 공제 가능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범위
  -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된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받음
  -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지 않음

-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구주택 보유자가 신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014년 이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개정(취득 당시 1주택이 있더라도 공제 가능)
  - 2013년 이전에는 신주택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및 그 이후 과세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취득 당시 무주택 요건 불충족)

-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 범위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5 그 밖의 소득공제

01 개인연금저축공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제한없음('13년 이후)
불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연간 1천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불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3.1 이후 가입 시)
만 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공제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또는 15%) * 연 400(총급여 1.2억원 초과자 300)만원 한도(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	연 36~105만원(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방법	과세하지 않음	연금소득으로 과세
중도 해지시 원천징수	• 이자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해지시 해지추징세액 min (①, ②, ③) ① 저축불입액의 4% ② 연간 72천원 ③ 환급금	• 기타소득으로 과세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사망으로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저축불입액의 2%(2013년 이후 가입분은 폐지)
추징 제외사유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증명 시(개인연금저축에 한함)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발생 •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종전「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소득세법」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소득세법」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2014년)

해당 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 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0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단, 2015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적용 가능)

가입 대상자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

※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자
기타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

납입액 및 공제 한도

-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
-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 실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며,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

중도해지

- 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불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누계액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하던 해지가산세는 폐지

0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저축 구분	2009.12.31. 이전 가입	2010.1.1. 이후 가입
청 약 저 축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봄

※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규정(연 120만원)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음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공제대상 아님

공제금액 한도

- 연 300만원 한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09년 5월부터 판매)

-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

>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첨부)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함

유의 사항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시 추징세액

주택마련저축 계약일부터 7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이 부과됨

구 분	추 징 세 액	
	이자·배당소득세 추징	소득공제액 추징('09.12.31. 이전 가입분)
1년 이내 해지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min(①, ②) ① 저축불입액의 8%(계좌별 연간 60만원 한도) ② 감면받은 세액 한도
1년 초과 5년 이내 해지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min(①, ②) ① 저축불입액의 4%(계좌별 연간 30만원 한도) ② 감면받은 세액 한도
5년 초과 7년 이내 해지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없음
추징제외사유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발생 • 저축해지전 3개월 이내 주택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만 추징에서 제외되고, 소득공제액은 추징됨	

주택 기준시가 관련 요건(청약저축)

- '06.1.1.이후 가입자부터 저축가입시점에 보유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적용

  ※ 가입 당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

- '08.1.1. 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 시에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이 적용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신축 주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으로 함

- 장기주택마련저축 :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아님

- 연도 중에 중도해지
  -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상속주택
  -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주택이 재개발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 판단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 주택완공 시 신규 취득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 판단

공제요건 검토시 유의사항

-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판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저축 가입 당시 또는 주택 취득당시 기준으로 판단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단순히 보여 주기만 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0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2017.12.31. 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금액의 1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천5백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5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투자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으로 개인투자조합이 출자 받는 금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창업·벤처 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공제금액 및 한도

- 해당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함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50%, 5천만원 초과분은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2016년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됨

유의 사항

출자 또는 투자방식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 방법

- 1회의 투자금액을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없음
- '16년도 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당해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해 '16년, '17년, '18년 중 어느 1과세연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요건

- 투자신탁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 설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개인투자조합 투자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text{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times \frac{\text{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text{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발급

구 분	발 급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투자)	투자한 벤처기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 신청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05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등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사용분 : 40%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30, 40%)
- 공제한도 :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200만원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아래의 ①의 금액 · ②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최대 500만원 한도)

공제금액 계산방법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0원
- 공제금액 : ①+②+③+④−⑤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40%

③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제외) × 30%

④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사용분) ×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30%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③)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등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 40%

유의 사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됨

가족카드 사용분

-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특별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
-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⑨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 현금영수증 제도 활용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현금영수증)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조회
  - 물품구입, 서비스 이용 후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 인증수단(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상담센터(☎126→내선1-1번)를 통해 본인 귀속으로 정정 가능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이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0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4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우리사주의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과세 개요
  출연시 소득공제 > 우리사주 취득시 과세 제외 > 우리사주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특례적용)
-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유의 사항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우리사주 인출시 근로소득에서 제외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 인출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인출금)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 (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0원)
소득구분	근로소득
수입시기	해당 우리사주의 인출일
원천징수 방법	해당 법인이 인출금에 기본세율(6%~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

※ 인출시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금액

- 의무 예탁기간의 다음날부터 2~4년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50%(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둘다 적용)**
- **중소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

0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연간 1천만원 한도)

■ 소득공제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유의 사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고용유지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급여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상시근로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임원
②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④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⑤ 단시간근로자로써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0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거주자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연 240만원 한도)

공제 요건

- (가입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신고대상자 및 일용근로자 제외)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근로소득(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만 있는 자도 가입대상에서 제외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요건)

  ①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으로서 연 납입한도 600만원

  ② 계약기간 10년 이상, 중도에 원금 인출이 없을 것('15.12.31.까지 가입)

- (소득공제액) 저축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 배제

소득공제 신청서류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2015년 이후 납입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

09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거주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포함 소득공제

①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다만,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는 제외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다만, 2015년 이후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벤처조합에 직접 출자분은 제외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④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⑤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특법 제91조의16)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 종합한도 제외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유의 사항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 여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여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벤처조합에 직접 출자분은 제외)			

- '13.1.1~'13.12.31.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01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4.1.1., 경력단절여성 '17.1.1.) ~ '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세액감면

취업시기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한도
'16년 이후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의 70%	3년	연 150만원
'14년~'15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50%	3년	한도 없음
'13년 이전	29세 이하 청년	소득세의 100%	3년	한도 없음

* 29세 이하 청년 : 현역병 등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한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간(복직일이 최초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적용

○ **(세액감면 제외대상자)** 임원, 최대주주 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단,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감면 가능)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이나,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함

○ **(감면신청)**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올해 취업하여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전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올해 이전 연도에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감면세액 계산)**

$$=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율}$$

01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18)

일정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50% 감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에 2018.12.31.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소득세의 50%를 감면

※ 내일채움공제에 매월 납입하는 기업 부담금은 근로소득이 아님

- **(중소기업 핵심인력)**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세액감면 제외대상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비속, 그와 친족관계인 사람
- **(감면신청)**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되어 인가된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대부분 2년)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조세조약 상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영어권) : 캐나다

감면세액 계산

$$\text{감면세액} =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times \text{감면비율}$$

02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	근로소득 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 130만원) × 30%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 세액공제 × [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손자·손녀는 대상 아님)

- 기본공제대상자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3명 60만원, 4명 90만원)
- 6세 이하 : 1명 초과 1명당 15만원
-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다만,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조특법§100의30②)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구 분	내 용	공제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 12%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총급여 1.2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특별세액공제 (p.72 참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항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료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15%
의료비			15%(난임시술비는 20%)
교육비			15%
기부금	정지차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 15%, 초과분 : 25%
	법정기부금		·2천만원 이하분 : 15%, 초과분 :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로서 특별소득공제(소법 §52⑧), 특별세액공제(소법 §59의4⑥), 월세액세액공제(조특법 §95의2)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13만보다 적은 경우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p.84 참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구 분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매월 징수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연말정산	산출세액의 10% (연말정산시 재 정산)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11.1.~19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포함)에 의해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유의 사항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납입액 → 연 700만원을(연금저축은 총급여 1.2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세이연소득,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 납입액 제외) × 12%(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15%)

※ 종전의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2014년 이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특별세액공제의 종류와 공제 요건

항 목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① 보험료	○	○	○	
② 의료비	×	×	○	
③ 교육비	×	○**	○	직계존속 제외
④ 기부금	×	○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특별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본인은 요건 제한 없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입사 전, 퇴직 후에 지출한 비용

-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기부금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함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근로자 1명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의료비 등에 대해 공제 가능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 비용

-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타인이 부담한 비용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봄

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

- 연도 중 혼인 · 이혼 · 별거 · 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휴직기간 지출한 의료비

-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

납세조합공제(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연말정산을 하는 때 다음해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text{납세조합 공제액} = \text{종합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10\%$$

$$\text{※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금액} = \text{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 \times \frac{\text{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text{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 + \text{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98.1.1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은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제신청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당해 금융기관이 발행)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03 특별세액공제

가.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 보험료*1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2	연 100만원 한도	15%

*1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
*2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공제시기 :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유의 사항

-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
  -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
  -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능
  -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

-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
  -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능
- 일시 납부한 보험료
  - 보험계약기간이 '17.6월부터 '18.5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17년 6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 (월별로 안분하지 않음)
-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공제 가능

나.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 회사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

  * '13년 귀속 이전 : 의료비 소득공제 200만원 이상자 → '14년 귀속부터 의료비 세액공제자로 변경

  *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별로 해당 금액만 합계하여 기재

유의 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항목	증명서류		국세청 제공여부*
	영수증 명칭	발급처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의료기관	○ (해당 의료기관, 약국, 판매처가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약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 기관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안경점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판매처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판매처 (임대처)	

* 국세청 제공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구 분	의료비 세액공제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선지급 후 보험금 수령)	공제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환급금	공제대상 아님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중복공제는 안됨)	공제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카드')	공제대상 아님
○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공제대상 아님
○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공제대상 아님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공제대상
○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공제대상 아님
○ 진단서 발급비용	공제대상 아님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공제대상 아님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공제대상

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가능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연체로 추가 지급액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 (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①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구 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1]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2]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1)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2) 경찰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해당

유의 사항

장학금 등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 세액공제대상자

근로자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국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 근무자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 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항목	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재학 중 선납교육비 (예) 9월~익년 8월분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를 적용

예) 해당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17.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원, '17.8월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한 경우

> 교육비 지출액 1,100만원[300만원(500만원 중 고등학생 교육비한도) + 800만원(대학교교육비)] 중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
-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 가능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직업능력훈련비

- 해당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근로자 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함

세액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구 분	교육비 세액공제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아님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공제대상
○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공제대상 아님
○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공제대상 아님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	공제대상
○ 방과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식비 포함)	공제대상
○ 국가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라.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기부금 종류 및 소득공제·세액공제대상 한도

종 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5% (2천만원 초과분 30%)*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지정기부금*1 (종교단체 제외)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	

*1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을 포함하여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합하여 2천만원 이하분은 15%, 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

유의 사항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교육비 ·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다음의 학교 등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전공대학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립학교의 신축 · 증설, 시설확충 그 밖의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법인(비영리교육재단) •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 •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다음에 해당하는 이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유치원의 장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 기능대학의 장 •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불우이웃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

※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해당 대학생이 위의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유의해야 할 기부금 유형

기부금	기부금 유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법정기부금
대한적십자사에 기부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거주자에 한함)	30% 한도 기부금

특별재해(재난)지역(선포 전·후 포함)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 특별재해 발생시부터 복구 완료시까지의 자원봉사를 말하며,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는 단체의 장·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하며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봉사일수 환산시 소수점 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예) 자원봉사시간 50시간 = 6.25일 ⇨ 7일 (기부금액 : 35만원)
-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해 기부금에 포함

기부금 과다공제 표본조사

-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중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0.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 실시
-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종 류	공제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가능 여부	이월공제 연 수
정치자금기부금	○	×	×	–
법정기부금	○	○	○	5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	–
지정기부금	○	○	○	5년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부금액 계산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금전가액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액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봉사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봉사한 경우 해당 복구활동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경우

-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일괄공제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공익성 기부금단체 확인 방법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공고)에서 기부금 관련 단체 공고 현황을 확인

04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공제 요건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유의 사항

▸ 세액공제대상 월세액 계산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중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공제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Ⅳ.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 외국인 근로자 :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교

항 목		구 분		비고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연간 근로소득		국외원천 소득 포함	국내원천 소득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른 단기거주 외국인은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근로소득공제		○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만 공제	
	추가공제	○	본인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한함
특별소득 공제	건강보험료 등	○	×	
	주택자금	×	×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등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주택마련저축	×	×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출연한 금액
세액공제	근로소득	○	○	
	자녀	○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	
	납세조합	○	○	납세조합 가입자가 납세조합에 의하여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시 적용
	외국납부	○	×	

2 외국인의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나,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특례 적용

-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하고, 당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제외 대상자

-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
  - (법인기업)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30% 이상 출자, 사실상 영향력 행사)
  - (개인기업)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 다만,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만 적용
- 다만, '14년 이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18.12.31.까지는 과세특례 계속 적용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헤드쿼터 인증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시작일부터 5년간 적용

  * 글로벌 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지원·조정업무 수행

» 단일세율 과세특례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 × 19%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공제·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신청서를 첨부

》 외국인근로자 매월 원천징수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와 단일세율(19%) 중 선택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음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2011.4.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 비교

일반적인 경우	단일세율 · 분리과세 적용
급여총계(비과세포함)	급여총계(비과세포함) × 19%
– 비과세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본인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등	
산출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 결정세액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 외국인은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다음의 서류를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등)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이외 외국인은 여권번호가 기재된 여권사본

3 외국인 근로자 세액감면

정부간 협약에 의한 외국인 세액감면

-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세액 감면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외국인근로소득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규정 개정

구 분	종 전		개 정 (2015.1.1.부터)
	2009.12.31.까지	2010.1.1.부터	
대 상 근로자	•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 기술집약적산업 · 과학계 정부출연연구 기관 연구원 등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로 조세 감면되는 외투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근로하는 외국인 기술자 • 기술집약적산업 · 과학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일정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감 면 혜 택	• 근로제공 후 최초 5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	• 근로제공 후 최초 2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좌동
외국인 기술자	• 외국인 및 내국인 중 재외국민	• 외국인만 가능	• 좌동

외국인 기술자 범위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한해 적용되므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8.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

-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

»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한 이후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감면대상기간 중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신청

- 감면신청은 감면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므로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면 세액감면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면제신청서가 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면제
- 확정신고 경과 후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소득세 감면

» 감면세액 계산

$$\text{감면세액} = \text{종합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50\%$$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원어민교사)

- 원어민교사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
-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혜택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조세조약 상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영어권) : 캐나다(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V. 연말정산 사례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함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유리

- 단,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신용카드 등(총급여액 25%)의 경우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2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연말정산 방법

총급여액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액 (총급여액 = 전체 급여 – 비과세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음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시 월할 계산하지 않고 인별 요건 충족 시 공제
연금보험료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근로제공기간 외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공제 가능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상기 외 '그 밖의 소득공제'	근로제공기간 외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공제 가능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음
자녀세액공제	월할 계산하지 않고 인별 요건 충족 시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근로제공기간 외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공제 가능
상기 외 '특별세액공제'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 연도 중 퇴직하여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퇴직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가능(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
-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3 제출서식 작성 사례보기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3.10.>(개정안 포함)

(8쪽 중 제1쪽)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2017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이강모	주민등록번호	690701-1******
근무처 명칭	한강건설(주)	사업자등록번호	123-81-1****
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2016.1.1~2016.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여부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Ⅰ.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6세 이하		건강·고용 등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직불카드등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3 명)							국세청		3,000,000		4,800,000	2,500,000	8,000,000	5,000,000	7,000,000	4,000,000	2,000,000	
								기타	1,700,000			850,000	1,550,000						700,000
	0	이강모	○					국세청				2,300,000		8,000,000	5,000,000	7,000,000	4,000,000	2,000,000	
	1	(근로자 본인)						기타	1,700,000			500,000							700,000
	3	황정연						국세청				2,500,000							
	1	700701-2******						기타				350,000							
	4	이태현	○					국세청		1,500,000			2,500,000						
	1	980601-1******						기타					350,000						
	4	이태희	○					국세청											
	1	101230-4******					○	기타					1,200,000						
	4	이태영	○				○	국세청		1,500,000									
	1	161230-3******					○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분납신청 여부"란은 소득세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신청 여부를 표시합니다.
3.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 50 ① 3 마)	8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4.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 6세 이하: (. . .) 이후 출생(만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5. "부녀자 공제" 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정하여 그 적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6. "장애인 공제" 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7.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 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8. "직불카드등" 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이 포함된 금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2,500,000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2,500,000		
III.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1,700,000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1,700,000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2,800,000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이월분)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IV.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15년 출자 · 투자분		조합 등	출자 · 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2016년 출자 · 투자분		조합 등	출자 · 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2017년 출자 · 투자분		조합 등	출자 · 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8,000,000		
		② 직불 · 선불카드(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5,000,000		
		③ 현금영수증(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7,000,000		
		④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4,000,000		
		⑤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2,000,000		
		계(①+②+③+④+⑤)				26,000,00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8쪽 중 제3쪽)

구분			세액감면 · 공제명세		세액감면 · 공제 명세					
	세액감면	외국인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V.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1,000,000		1,000,000		
			연금저축		납입금액	2,500,000		2,500,000		
			연금계좌 계			3,500,000		3,500,000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3,000,000	100만원	1,000,000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3,000,000		1,000,000		
			의료비	본인 · 65세 이상자 · 장애인	지출액	2,850,000	작성방법 참조	2,800,000	15%	
				난임시술비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2,850,000		2,850,000	15%	
				의료비 계		5,700,000		5,650,000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2 명)	유치원 · 학원비 등	1,200,000	1명당 300만원	1,200,000		
				초 · 중 · 고등학교(1 명)	공납금	2,850,000	1명당 300만원	2,850,000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4,050,000		4,050,000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100,000	작성방법 참조	100,000	100/110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00,000		100,000	15% (25%) (30%)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500,000		500,0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기부금 계		700,000		700,000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1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1 월 일

신고인 이 강 모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2.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3. 연금 · 저축 등 소득 · 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 ·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유의사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 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쪽 중 제7쪽)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한강건설(주)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81-1******
	③ 성 명	이 강 모	④ 주민등록번호	690701-1******
	⑤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길		(전화번호: 02-0000-0000)
	⑥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길		(전화번호: 02-0000-0000)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퇴직연금	00보험	987-65-43210	1,000,000	120,000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 · 세액 공제금액
연금저축	ㅁㅁ은행	12345-67890	2,500,000	300,000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 · 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소득 · 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 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 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 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 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2014년 이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2015년 이후 가입)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월세액 ·[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한강건설(주)	② 사업자등록번호	100-81-5*****
	③ 성 명	이 강 모	④ 주민등록번호	630101-1******
	⑤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전화번호 : 02-1234-5678)			
	⑥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번지 (전화번호 : 02-1234-5678)			

2. 월세액 소득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㉒ 공제금액
				⑲계	⑳원금	㉑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㉓ 임대인 성 명 (상 호)	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㉕유형	㉖ 계약 면적(㎡)	㉗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㉘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㉙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㉕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㉖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㉕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주택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㉙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국세청
www.nts.go.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5.3.13.>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이강모	② 주민등록번호 : 640101-1******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2017)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 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여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⑨ 의료증빙코드	⑩ 건수	⑪ 금액	⑫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640101-1******	○	- -		1		2,300,000	×
640101-1******	○	101-01-0****	A안경	5	1	500,000	×
690701-2******	×	- -		1		2,500,000	×
690701-2******	×	110-10-1****	B안경	5	1	350,000	×
-		- -					
-		- -					
-		- -					
-		- -					
-		- -					
		합 계			2	5,700,000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1 월 일

제출자 이 강 모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작 성 방 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같은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⑫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란은 의료비 지급내용이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시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7.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2017.3.10.>

기 부 금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한강건설(주)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81-1****
	③ 성 명	이강모	④ 주민등록번호	640101-1******
	⑤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길		(전화번호 : 02-0000-0000)
	⑥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길		(전화번호 : 02-0000-0000)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

구 분		⑨ 기부 내용	기 부 처		⑫ 기부자			기부 명세				
									기부금액			
⑦ 유 형	⑧ 코드		⑩상호 (법인명)	⑪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⑬합계 (⑭+⑮)	⑭공제 대상 기부 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⑮기부 장려금 신청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⑯ 기타
정치자금	20	금전			1	이강모	640101-1******		200,000	200,000		
법정	10	금전	00대학교	101-82-0****	1	이강모	640101-1******	1	500,000	500,000		

❸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코 드		10	20	40	41	42	50
합 계	700,000	500,000	200,000				
본 인	700,000	500,000	200,000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❹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⑰ 기부금액	⑱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⑲ 공제대상 금액(⑰-⑱)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10	2017	500,000	-	500,000	-	500,000	-	-
20	2017	200,000	-	200,000	-	200,000	-	-

210㎜× 297㎜(백상지 80g/㎡)

국세청
www.nts.go.kr

(뒤 쪽)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유형란 및 ⑧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법정","지정","종교" 유형에 해당하는 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법정","지정","종교"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 코드번호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⑨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상호(법인명)란: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⑩ 상호(법인명)란과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⑬ 기부 명세의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⑫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란 :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공제제외 기타"에 포함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⑮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에 해당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8. ⑮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 '2.해당연도 기부 명세'의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0.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구 분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코 드	10	20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5년	-	-	5년	5년

11.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⑰ 기부금액, ⑱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⑲ 공제대상금액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013.12.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안>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 주 자 성 명	이강모	생년월일	1964.01.01
근 무 처 명 칭	한강건설(주)	사업자등록번호	123-81-1****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① 내·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 ((⑥+⑦+⑧+⑨+⑩)	⑥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⑦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⑧ 직불·선불카드등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⑨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⑩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내국인	본인	이강모	640101	국세청 자료	26,000,000	8,000,000	7,000,000	5,000,000	4,000,000	2,000,000
				그 밖의 자료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1 합 계 액					26,000,000	8,000,000	7,000,000	5,000,000	4,000,000	2,000,000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⑪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⑨×40%)	⑫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⑩×40%)	⑬ 직불카드등사용분 공제금액 (⑦+⑧)×30%	⑭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15%)	⑮ 공제제외금액 계산			⑯ 추가공제 율사용분 증가분 공제금액
				⑮-1 총급여	⑮-2 최저사용금액 [(⑮-1)×25%]	⑮-3 공제제외금액	
1,600,000	800,000	3,600,000	1,200,000	56,000,000	14,000,000	3,000,000	

⑰ 공제가능금액 [⑪+⑫+⑬+⑭ -(⑮-3)]	⑱ 공제한도액 [3백만원과 (⑮-1)×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	⑲ 일반 공제금액 (⑰과 ⑱ 중 적은 금액)	⑳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⑰ > ⑱인 경우에 ⑰-⑱과 ⑪(한도: 1백만원) 중 적은 금액]	㉑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⑰ > ⑱인 경우에 ⑰-⑱-⑳과 ⑫(한도: 1백만원) 중 적은 금액]	㉒ 최종 공제금액 (⑲+⑳+㉑)
4,200,000	3,000,000	3,000,000	1,000,000	200,000	4,200,000

⑮-3 계산

구 분		계산식	⑮-3
(⑮-2) ≦ ⑥		(⑮-2) × 15%	
(⑮-2) > ⑥	(⑮-2) ≦ (⑥+⑦+⑧)	⑥×15% + [{(⑮-2) - ⑥} × 30%]	3,000,000
	(⑮-2) > (⑥+⑦+⑧)	⑥×15% + (⑦+⑧)×30% + [{(⑮-2) - (⑥+⑦+⑧)} × 4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2018년 1 월 일

신청인 : 이 강 모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기

(방법1) 종합소득 확정신고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가능

(방법2) 경정청구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 종합소득 확정신고 (5월 1일 ~ 5월 31일)

- '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매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서도 공제 가능
-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소득·세액공제신고서
  관련증명서류

» 경정청구

-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 이외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
-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당초·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당초·수정분)
  추가공제 증명서류

»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적용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적용

[경정청구서 작성사례]

[사 례] 2017년 본인 지출 지정기부금 1,000,000원을 연말정산 시 공제 누락하여 2018.7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

[별지 제16호의2서식] (2010. 3. 31. 개정)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개월
청구인	①성 명	이 0 0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630101-1******		
	④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100번지		⑤ 전화번호	02-1234-5678
	⑥상 호				

신 고 내 용			
⑦법 정 신 고 일	2018.03.12.	⑧최 초 신 고 일	2018.03.12.
⑨경 정(결정)청 구 이 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누락		

구 분	최 초 신 고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기재	경 정 (결정) 청 구 누락된 항목을 넣어 재계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기재
⑩세 목	근로소득	근로소득
⑪과 세 표 준 금 액	7,587,283	7,587,283
⑫산 출 세 액	455,236	455,236
⑬가 산 세 액		
⑭공 제 및 감 면 세 액	250,379	400,379
⑮납 부 할 세 액	204,857	54,857
⑯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거래은행 영원한 은행 종로지점	계좌번호 100-200-300000
⑰환 급 받 을 세 액		150,00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8년 7월 일

청구인 이 0 0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2. 경정(결정)청구사유 입증자료

수수료
없 음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구비서류	결정(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 (○)			접 수 자
				접 수 일 인

210㎜×297㎜(신문용지 54g/㎡)

5 월급에서 매월 징수되는 세금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임
-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단, 실제 금액이 아닌 일정금액을 일률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

■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 선택(변경) 가능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

※ 선택(변경)한 경우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재변경할 수 없음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 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작은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추가 납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7.2.3. 개정) 조회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

»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책자에 의한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

– 공제대상가족의 수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수
본인,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20세 이하,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 =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사례 : 급여(비과세 제외)가 300만원인 근로자의 간이세액표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7	8
3,000	3,020	84,850	67,350	32,490	26,690	21,440	17,100	13,730	10,350

＊ 4인 가족(20세 이하 자녀 2명)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 수는 6명에 해당
(근로소득세 17,100원, 지방소득세 1,710원 합계 18,810원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6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하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
  - ＊ 근무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부터 조회 가능('17년 귀속은 '18년 5월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 My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홈택스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외부기관 제출용(관공서, 금융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과거 5년간 조회 가능)

※ 회사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17년 12월까지 제출한 경우 '18년 1월부터 조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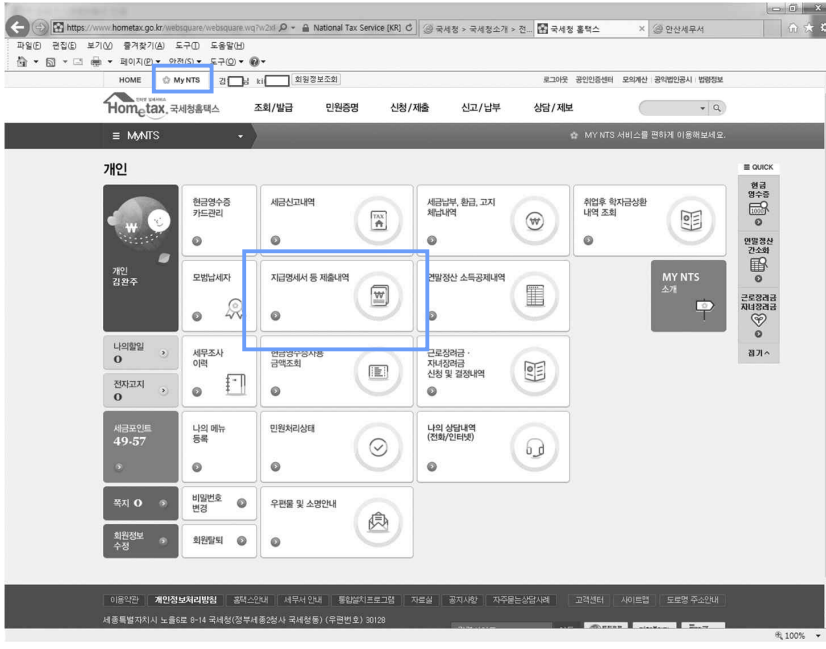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자료 활용 시 주의할 점

근로자가 주택자금 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축불입금액,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신고해야 함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소득·세액공제자료 활용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금액이 정확한 경우, 이를 출력하여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 중도 입사(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회사에 제출

»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전산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On-line 제출할 수 있음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접수번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 제공 [동의, 동의 취소] 신청서			
① 신 청 인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정보주체)	성 명	구 0 0	주민등록번호	370707-1******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1번지		
	전화번호	02-1234-4567		
②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 정보를 조회하는 자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근로소득자)	성 명	이 0 0	주민등록번호	680101-2******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1번지		
	전화번호	02-1234-4567		
③ 신청인과의 관 계	신청인(①)은 상기 근로소득자(②)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시부모)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형제자매			
④ 동의(취소) 하는 내용	☐ ( ) 해당연도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 (2016년) 해당연도부터 이후 연도의 정보에 대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 기존에 정보 제공 동의했던 것을 모두 취소함 < 해당연도의 구분 > ▪동의 신청일이 3월 11일~12월 31일 : 신청일이 속한 연도 ▪동의 신청일이 1월 1일~3월 10일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신청인(①) 본인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있는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정보를 상기 근로소득자(②)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동의 취소] 합니다.

2017년 12월 일

신 청 인 구 0 0 (인 또는 서명)

종 로 세 무 서 장 귀하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부 등)를 첨부
  대리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신분증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신청용)을 첨부

※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부 등)를 첨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신청인	◦성명 : 이 0 0	◦주민등록번호 : 680101-2******
	◦전화번호 : 02-1234-5678	
요양기관	◦상호 : ○○○과	◦사업자등록번호 : 100-01-1*****
	◦대표자 성명 : 홍 길 동	

상기 신청인 본인은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으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2017년 12월 일

위 신청인(확인자) : 이 0 0 (인)

홍 길 동 귀하

1.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 : 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환자 인적사항 및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 금액 등이고, 병명 등 진료명세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 귀하란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안 내 말 씀

- 정부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수납내역'(환자의 의료비 지출명세)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그러나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7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

internet

인터넷 상담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 인터넷상담사례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정보 안내
-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현금영수증 등록・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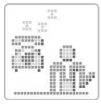

telephone

(국번없이) 126
- 내선 2 – 3 번 : 연말정산 세법상담
- 내선 1 – 5 번 :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 내선 1 – 1 번 : 현금영수증 상담
- 내선 1 – 3 번 : 지급명세서 상담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상담

※ 2018.1.8.~3.12.까지 상담전화 추가회선 운영
(내선 5-1번)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내선 5-2번)연말정산 세법 상담

visit

전국 세무서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확인

국세청
www.nts.go.kr

이 책자의 내용은 2017년 12월 기준의
세법 내용과 제도 및 세법개정안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자의 발간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에 적용시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발 행 일 자 2017년 12월

발 행 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필·편집 원천세과장 이 응 봉
행정사무관 김 용 재
국세조사관 강 신 혁
국세조사관 김 영 노